

퍼스트 제네릭 발매의 특허침해와 특허권자의 오리지널 보험약가 인하로 인한 손해발생

상당인과 관계 불인정 - 손해배상 책임 부인: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6. 선고 2015나

2040348 판결



특허침해 제네릭 의약품의 발매로 인한 특허권자의 오리지널 제품의 보험약가 인하처분  
과 그로 인한 특허권자의 손해에 대한 특허침해자의 책임인정 여부는 중요한 사항입니다.  
첫 소송사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,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모두 퍼스트 제네릭 회  
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

서울고등법원 2015나2040348 판결의 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특허침해자 퍼  
스트 제네릭 회사(피고)의 행위가 "최초의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약가가 인하되기에 이  
르렀다고 하여, 피고의 행위와 원고(특허권자)의 손실 사이에 **상당인과관계**가 존재한다고  
단정하기 어렵다.

특허쟁송의 결과와 결부되어 발생한 약가 인하 및 회복에 따른 원고의 **손실**은 피고의 법령에 따른 신청행위로 **발단**이 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**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**으로 볼 수 있다.

약가 인하로 인한 이득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급여의 수급자들에게 귀속되었고, 피고가 제품 판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득은 특허권자에게 대하여 이루어진 배상으로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.

특허권자에게 발생한 **손실**을 공익적 차원에서 **보상** 등의 문제로 접근할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,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한 의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약가 인하 제도가 법령에 따라 집행됨으로써 발생한 **손실**을 불법행위로 보아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."

지재권분쟁, 침해대응/감정, 형사/민사소송, 손해배상, 심판소송, One-Stop 대응, A~Z 수행

---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